

울산 송정지구 B7블럭 금강펜테리움
입주자모집 공고(안)

펜테리움개발

목 차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안내	----- 3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4
	- 승인번호 / 공급위치 / 대지면적 / 공급규모	----- 4
	- 공급면적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4
	- 공통사항	----- 4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5
	- 특별공급 공통사항	----- 5
	- 특별공급 유의사항	----- 6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6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6
	- 기관추천 특별공급	----- 7
	- 다자녀 특별공급	----- 7
	- 신혼부부 특별공급	----- 8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9
	- 일반공급	----- 9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 9
	- 신청자격	----- 9
	- 신청접수방법	----- 10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0
	- 가점접수 산정기준표 및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11
	- 노약자, 장애우 등 청약 안내	----- 11
	- 2순위 청약 안내	----- 11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11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2
	- 신청일정 및 장소	----- 12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12
IV.	당첨자발표 및 예비당첨자 공급방법	----- 12
	- 일정 및 계약장소	----- 13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13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13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13
V.	계약체결	----- 13
	- 계약 구비사항	----- 14
	- 계약시 유의사항	----- 14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15
	- 계약자 대출안내	----- 15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15
	- 입주예정일 안내	----- 15
	- 부대복리시설	----- 15
	- 하자, 피해보상 안내	----- 15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마이너스 옵션	----- 15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가구)	----- 15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금액 / 유의사항	----- 17
VII.	기타	----- 18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8
	- 소형 저가주택	----- 18
	-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 18
	- 청약 및 계약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19
VIII.	단지여건 사항	----- 19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19
	- 단지 내부여건 및 설계고지사항	----- 20
	- 단위세대 관련 고지사항	----- 22
	- 기타유의사항	----- 23
	-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유의사항	----- 23
IX.	기타 사항	----- 23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24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 24
	-감리자 및 감리금액	----- 24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 25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25
	-사이버 모델하우스	----- 25
	-건분주택 위치	----- 25
	-분양문의 전화번호	----- 25

울산 송정지구 B7블록 금강펜테리움 입주자모집공고(안)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은-2016.11.1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2.22.**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이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은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에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규정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를 특별공급 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므로,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울산 우정혁신도시 이전대상 부서의 종사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제당절 제한기간(전매금지 및 제당절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03.14.)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03.14.)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제당절이 제한됩니다. 단 이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대상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kkapt1.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리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증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 호 (. . .)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블록

☐ 대지면적 : 34,181,000㎡(공용주택: 34,067,000㎡, 근린생활시설: 114,0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5~21층, 7개동 총 5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총 544세대 중 특별공급 200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53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5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세대,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26세대)

☐ 공급면적 (단위:㎡/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1층 (취하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공급면적)	기타공용 + 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공공기관		
민영 주택	2017000044-01	84.5900	84.5900	25.9935	110.5835	41.9959	152.5794	62.7739	241	24	24	24	7	12	150	11
	2017000044-02	84.2118	84.2118	26.6069	110.8187	41.8081	152.6268	62.4932	259	25	25	25	7	12	165	13
	2017000044-03	84.3055	84.3055	25.5787	109.8842	41.8546	151.7388	62.5627	44	4	4	4	1	2	29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공급내역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세대 수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면적	건축비	계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 시
84.5900 A	1층 (105.106.107동 1호라인)	3	3	3	121,632,000	195,568,000	317,20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31,720,000	95,160,000
			8	8	121,632,000	203,568,000	325,20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3	3	121,632,000	205,568,000	327,200,000	32,720,000	32,720,000	32,720,000	32,720,000	32,720,000	32,720,000	32,720,000	98,160,000
			8	8	121,632,000	213,568,000	335,20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100,560,000
			13	13	121,632,000	227,568,000	349,20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104,760,000
			13	13	121,632,000	230,568,000	352,20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105,660,000
	193	가분층	193	193	121,632,000	238,568,000	360,20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08,060,000	
84.2118 B	1층	13	13	13	121,088,000	208,112,000	329,20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32,920,000	98,760,000
			13	13	121,088,000	218,112,000	339,20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101,760,000	
			14	14	121,088,000	232,112,000	353,200,000	35,320,000	35,320,000	35,320,000	35,320,000	35,320,000	35,320,000	105,960,000	
			14	14	121,088,000	235,112,000	356,200,000	35,620,000	35,620,000	35,620,000	35,620,000	35,620,000	35,620,000	106,860,000	
	205	가분층	205	205	121,088,000	243,112,000	364,20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36,420,000	109,260,000	
84.3055 C	1층	2	2	2	121,223,000	203,977,000	325,20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32,520,000	97,560,000
			2	2	121,223,000	213,977,000	335,20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33,520,000	100,560,000	
			3	3	121,223,000	227,977,000	349,20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34,920,000	104,760,000	
			3	3	121,223,000	230,977,000	352,20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35,220,000	105,660,000	
	34	가분층	34	34	121,223,000	238,977,000	360,20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08,060,000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900㎡	84.2118㎡	84.3055㎡
약식표기	84A	84B	84C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한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자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자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2009.04.0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동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 확장 등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등)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가가 있을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세대당 공급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입사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의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당사는 당사의 알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해지될 수 있음.)
- 중도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평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이전기관 종사자 등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것으로 봄

특별공급 신청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직계존비속

중복 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구분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6호 내지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 부분만)]	청약통장 필요 없음.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9호)	①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단, 청약저축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3	* 그 외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4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47조 3항]	청약통장 필요 없음.

- *구분 1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철거이주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중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 *구분 2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 *구분 3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탈락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올림픽패럴림픽 또는 국제기능올림픽패럴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경기인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 *구분 4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 : 가.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나.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가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할 수 있음
-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남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면적지정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주택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지속에 1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 차체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지속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급은 한 차체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신청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접수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신청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주체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함.

(단위:㎡/세대)

■ 특별공급 신청자격·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합계	84A	84B	84C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3	24	25	4
다자녀 특별공급	53	24	25	4
신혼부부 특별공급	53	24	25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	7	7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26	12	12	2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5% 이내)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7.02.2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7조」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함.
 - 가)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나)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라) 그 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1세대내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 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자격:**

-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기관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하기로 확정된 날(지방이전계획 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후 착공일을 말함)로부터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함)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함
- 2)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만 해당함. 다만,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
- 3)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시사·특별자치도시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음
- 4) 상기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함)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됨.

●**신청방법**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housing.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하시기 바람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접속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바로가기 > 혁신도시 울산송정지구B7 금강랜드리움 > 유의사항 확인 >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및 본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주택형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신청 완료

●**신청기간**

-인터넷 청약 시간은 **2017.02.27.(월) 09:00~17:30, 2017.02.28.(화) 09:00~15: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입주자의 선정방법** :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 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특수입부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부 세대군인, 장기복부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지속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지역 거주자 중 당첨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접수기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접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청약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 청약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 10년 이상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거주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거주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거주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양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전년도(2015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통계청 자료)

구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소득 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1인당 평균소득(329,369원)*N-5] * N은 6인 이상 가구원수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만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과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 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①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전직자	- 금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기간 1개월 미만: 동일직장·직급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지역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금년도 개업한 사업자(개인,법인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연금 미가입시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가서류 발급불가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현재 무직자라 하더라도 전년도 및 금년도 소득이 발생했던 경우 소득 입증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 근로자 중 전년도에 휴직등(과업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 * 일부 기간 휴직등 : 전년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 전체 기간 휴직등 후 당해연도 복직등(정상적으로 근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 월평균소득 추정 불가능 한 자 : 본인 재직증명서, 본인과 동일한 직장, 직급,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2.22.)현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이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정 후 잔여물량 발생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지역 거주자 중 당점자를 선정함.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점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가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제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banking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청약신청하기 ▶APT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SC,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KEB하나,신한은행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현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제외동포(제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지 및 해제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과거 분양상향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 제3항[별표2]관련)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금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본 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 예금
민영주택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3)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중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름.

• 신청접수 방법

1. 특별공급 :

- (1) 이천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http://www.housing.or.kr>) 또는 울산 송정지구 금강 펜테리움 그린테라스 홈페이지(<http://www.kkapt1.co.kr>)에 접속하여 청약
- (2) 기관추모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건물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1) 공통

- 총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용(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판」의 인자판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제원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삽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의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 (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라) 가)~다)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 인정기준	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나)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인증서류 추가제출[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가)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나)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다)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라)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대상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거래은행 창구 방문 청약시(09:00~16:00):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주택청약 참가은행: 기업,국민,수협,농협,우리,SC,한국세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KEB하나,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2017.03.09.(목)) 익영업일(2017.03.10.(금))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대상	환불장소	신청금 납부방법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장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서와 동일), 신청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서와 동일)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 2017.02.27.(월) 09:00~17:30 - 2017.02.28.(화) 09:00~15:00	인터넷 신청	- 한국주택협회(http://www.housing.or.kr) 또는 울산 송정지구 금강컨트리움 그린테라스(http://www.kkapt1.co.kr)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2017.02.28.(화) 10:00~15:00	건본주택 방문 신청	- 울산 송정지구 금강컨트리움 아파트 건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당동 1297-1,2,3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017.03.02.(목) 08:00~17:30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2순위		- 2017.03.03.(금) 08:00~17:30		- 국민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약사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 구성원입증서류(건물통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청약통장순회(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회(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회(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절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진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임진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	○		특별공급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첨서식] 및 [별첨 제2호 서식]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신청은 송정지구 금강컨트리움 홈페이지 및 한국주택협회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상기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본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첨 제2호서식]
본인(배우자 포함) 이외의 제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요,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2.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시 당사는 일체의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본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IV 당첨자발표 및 예비당첨자 공급방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자(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 이전기관종사자	-일시: 2017.02.28.(화) / 발표 17:00 -장소: 당사 건본주택 *이전기관종사자 홈페이지 게재	-일시: 2017.03.09.(목) -확인방법: -아파트투유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홈페이지 (http://www.kkapt1.co.kr)	-일시: 2017.03.14.(화) ~ 2017.03.16.(목) (3일간, 10:00~16:00) -장소: 당사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일시: 2017.03.09.(목) / 발표 10:00 -장소: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제사용 불가 및 계약금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지정계약만 인정되며, 현금수납은 인정되지 않음.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때 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 조회
	이용기간	2017년 03월 09일 ~ 2017년 03월 18일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7년 03월 09일 ~ 2017년 03월 18일 (10일간)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계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1순위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기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기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당첨취소,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해약 세대 발생 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단,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하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계약 후 잔여 동·호수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일 이내에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제사용이 불가함.

V 계약체결

□ 계약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기준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계약자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특별공	기권추천/ 노무부	○	•주인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자
	다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	•임신증명서(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해당자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해당자
		○	•임신증명서(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해당자
		○	•투자사실 확인자료 (기업에만 해당)	해당자
		○	•연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구기관에만 해당)	해당자
		○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의료기관에만 해당)	해당자
		○	•법인 인감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	해당자
		○	•근로소득세 원징징수납부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해당자
		○	•제작 증명서 (국가·지방단체는 제외)	해당자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 (은행발급, 외국인만 해당)	해당자
	이전기관 종사자	○	•여권 및 비자 사본 (외국인만 해당)	해당자
		○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전분주택 비치)	
		○	•서약서 (전분주택 비치)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준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
		○	•군 복무 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승인(가입)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임주자지속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계약자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상등본 포함)	해당자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해당자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해당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으자(해당주목에 대한 소명자료)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해당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집주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계약자	
제3자 대리인 신청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임주자모집공고일(2017.02.22.)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주주, 계약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분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관명함.
- 청약접수일자 및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포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진행 절차 이후에도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단지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환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주체에 책임이 물을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년 4월 1일 제당첨 제한 완화에 의거)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03.14.)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일자는 추후 통보함. (※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법시행령 제73 및 별표3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별표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건분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들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KB국민은행	393337-04-00556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건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단,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상기 계좌와 연동 입금처리 되는 계약자별 가상계좌가 적용될 수 있음(적용시 추후 공지예정)
- 중도금·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입을 당사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이자 및 중도금보증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향후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잔금 납부시 대납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청이 있을시 상기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자기 책임하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9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체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의무불이행으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보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체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부대부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2개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단위:m²/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금	잔금
84A	15,800,000	1,000,000	14,800,000
84B	11,000,000	1,000,000	10,000,000
84C	10,800,000	1,000,000	9,8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KB국민은행	393337-04-00556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2. 개정 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침실1", "침실2"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별지 '계약자 선택 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예 : 옛 세대 비 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 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 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새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외부 전선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선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선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 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4층 이상)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체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1)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선택 및 설치대상	설치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	입주시	
84A	안방+거실	3,600,000	300,000	3,300,000	
	안방+거실+침실1	5,000,000	400,000	4,600,000	
	안방+거실+침실1+침실2	6,400,000	600,000	5,800,000	
84B	안방+거실	3,600,000	300,000	3,300,000	
	안방+거실+침실1	5,000,000	400,000	4,600,000	
	안방+거실+침실1+침실2	6,400,000	600,000	5,800,000	
84C	안방+거실	3,600,000	300,000	3,300,000	
	안방+거실+침실1	5,000,000	400,000	4,600,000	
	안방+거실+침실1+침실2	6,400,000	600,000	5,800,000	

(2)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시스템에어컨	KB국민은행	393337-04-00556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 홍길동

(3) 유의사항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시스템에어컨 시공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가동시에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선정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동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벽지,조명,위생기기 타입,창호,가구,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문	· 문틀(상부마감관,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등 창호철물 일체, 도어제크,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쉘, 세대현관 문틀 및 문짝, 방화 문틀 및 문짝, PL창호, 일반도어록(현관), 목창호 가를 및 가를 사춤, 실외기 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바닥	· 강마루, 절레발이, 현관 바닥재,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 몰탈포함), 현관 디딤판, 발코니 바닥 배수구	· 바닥 난방+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바닥 배수 슬리브
벽	·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주방타일, 래핑 등)	· 시멘트벽돌, 단열재, 석고보드, 발코니 벽 도장, 실 칸막이
천장	· 천정지, 우물천정, 물딩, 등박스	· 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정 도장
욕실	· 위생기구류(양면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젤다이, 타일(바탕몰탈포함),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헨, 욕실장, 인테리어 액세서리 일체, 비상콜, 욕실론, 스위치 콘센트, 약세사리류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 방수, 전기 배관/배선, 설비배관, 배기덕트
주방	· 주방가구(상판, 액세서리 포함), 가스쿡탑, 렌지후드, 벽타일, 아일랜드식탁(인덕션포함) 주방TV, 수전류	· 석고보드, 소방관련시설(자동식소화기 설치 관련), 전기통신 기계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조명가구	· 부착형 조명 등기구(매입 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가구 및 기타	· 신발장, 화장대(거울 및 상판포함), 불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일체, 발코니선반, 드레스룸 도어, 발코니 수전	·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원/㎡, 부가치세 포함)

공고상(정약시) 주택형(㎡)	84.5900A	84.2118B	84.3055C
금 액	24,839,000	24,892,000	24,476,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 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시스템에어컨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배선기구류 위치, 또는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 부터 60일 이내에 별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책임을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동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생략 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약을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나,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Ⅶ 기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5)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6)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민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 기관 및 요건 등)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자격 거주개시일(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기재방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 및 큰 규모로 변경한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의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공급신청자 및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두 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산관리기관에서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으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VIII 단지 여건사항

※ 이하 명시한 택지개발지구 및 단지 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이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울산송정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4-436(20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울산광역시 고시 제 2015-10(2015.01.26.)호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5-145(2015.07.02.)로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되었고, 향후 자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라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자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당 사업주체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지구 인근에 동해남부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한 후 당해 아파트를 청약, 계약하시기 바람이며, 추 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

- 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12.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하천, 경관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 사업주체와 무관함.
 13. 당해지구는 인근 울산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청약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추후 항공기 소음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4. 준공 전 국토교통부 비행검사를 실시하여 항행안전시설 전과장에 발생여부를 확인 후 항행안전시설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축물을 제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을 해야 함.
 15. 본 아파트 단지는 도로인근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당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6.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관할관청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17. 당해 지구 내에는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계약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18.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19.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 당해지구 내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향후 학생 수용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사업계획 변경, 주택 공사 진행상황, 주변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에 따라 학교 신설여부와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21.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2. 당해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진입 또는 입학하는 중,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 학교근인 송정화북학교근과 북부학교근에 배치 가능(예정)함.
 23. 초등학생은 화북초등학교 교실 증축 후 배치 가능(예정)함. 그러나 학생 배치 계획은 송정지구 및 북구지역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24.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설립허가)와 학생배치계획·교육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25. 단지 인접지에 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6.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하천,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27.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8.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29. 송정택지지구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30.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제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1.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및 설계고지사항

1.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계약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사업승인도면의 내용에 준하여 설치됨.
3.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입주시에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이나 동표시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색채 및 조경자문, 현장여건, 입면차별화 등에 따라 단지 내 주동 및 상가 또는 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시설입면 등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이나 색채, 측벽 로고의 위치, 조경, 세부식재 계획, 야간조명, 옥상, 조형구조물 등이 변경,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5.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6.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7.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써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8.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9.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10.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석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체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11.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D/A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부 세대에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배출된 공기에 의해 환경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12. 어린이 놀이공간 및 옥외 운동시설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3.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 및 1층 세대는 다소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견본 주택 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14. 단지 배치상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5.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피침, 무동력출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받을 수 있음.
16.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단지 내부 시설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건,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되거나,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되거나, 조명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7. 단지 외부의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망효과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18. 건본주택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시공되어 있으며, 가변형 벽체는 철거 또는 시공된 상태로 되어있으므로, 실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형태가 달라짐.
19.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0.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정압기의 위치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21.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갑"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을"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22. 관리사무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23.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대지면적은 시설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각 세대 대지면적이 소수점이하 변경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정산처리를 하지 않음)
24.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25.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부분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분배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으며(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음.
26.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이 불가함.
27.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8.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자가 부담함.
29.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30.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단지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일부는 설계변경 될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31. 단지 차량 출입구 부분은 주거부분과 비주거(근린생활시설)부분이 공동으로 사용되며, 비주거 주차장은 지상에 위치되어 있음.
32.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33. 일부동의 일부층 부분의 경우 일부만 필로티가 위치하고, 나머지 일부는 세대가 위치하오니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의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으로 인하여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에서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102동 1호, 103동 4호, 104동 1호, 105동 2호)
34. 각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35.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지하주차장출입구,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단지내 상가, 기타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등의 경우 각 동별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들의 위치, 규모에 대하여 필히 건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서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36.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의 위치, 모양, 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건본주택에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37. 지하1층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진입도로의 접근성으로 인해 일부 점포간 바닥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본공사시 도로와 단지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8.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9. 커뮤니티시설이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40.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별동학습관)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41.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휘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42. 사용검사 후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경로당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
43. 대지면적은 시설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4.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5. 단지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판매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46. 아파트 옥탑 경사 지붕은 시공안전상 경사지붕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7.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48. 각 동의 외장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49.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0. 단지 일부구간의 레벨이 단지 외부의 도로 레벨보다 낮은 구간이 있으니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및 설계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사항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또한, 단지 외부의 도로 레벨은 관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1. 각동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2. 부지 경계부분의 경사면과 옹벽높이는 현황도로와 인접부지 레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3. 단위세대 내 배수구 등의 설비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54. 단지의부 도시계획시설(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근린공원, 완충녹지, 하천 등)은 추후 도시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
55. 근린생활시설 옥상바다에 에어컨실외기가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으니 해당세대는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56.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가구 및 운동기구 종류, 수량은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내부공간과 마감제도 추후 인테리어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7. 생활폐기물 보관소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위치 및 크기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58.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는 130만 화소이상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설치, 운영자가 자체 설치해야 함.
59.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이하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60. 105동 전면 및 우측면, 106동 배면 및 우측면에 주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주차차단기, 맘스레이션이 계획되어 있고, 101동 정면 및 좌측면, 102동 전면에 부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 주차차단기,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차량 불빛 간섭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61.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생활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2개소,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2. 저층 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63. 102동, 105동, 106동 인접 지하공간에 전기설/발전기설/기계실/저수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64. 주동 저층부(필로티 포함)는 일부 석재, 석재빔철, EPS물딩, 외벽용 수성페인트 마감임. (단,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65. 단지 내 일부에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천창이 동 주변에 설치됨.
66.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 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동에 따라 다름.
67. 각 동의 진출입구는 주변 지반 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68.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진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69.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치는 공동으로 사용함.
70.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71. 단지 내 조정시설, 정원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 시설물에 따른 조정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72. 실 내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보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정(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 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3.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정면 및 좌측방향에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들이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4.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별도구획 설치될 예정이며, 출입구는 아파트 차량 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됨.
75. 주거동 옥상의 조형물은 본 공사 시 그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6. 103동 전면, 106동 전면 및 107동 후면층에 어린이놀이터, 102동과 106동 전면층에 커뮤니티광장, 104동과 105동 전면층에 담소정원, 102동 전면층에 보육시설 및 경로당, 107동 배면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77. **단지내 동측 35m대로변에 방음벽(H:5m)이 설치되오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78.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활용도에 따라 외산 자재가 사용될 수 있음.

□ 단위세대 관련 고지사항

1.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2.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은 "입주자"를 포함하여 지칭함)는 분양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결정한 선택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자재 매입 및 공사일정과 관련하여 선택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3.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4. 일부세대는 세대내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마감자재 테스트 부착 등의 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5.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 시점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6. 발코니 확장의 경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7. 발코니 확장시 외관구상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으며,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증감 및 벽체 돌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8. 발코니확장 및 옵션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세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9. 발코니 비확장세대(기본형세대)의 경우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본주택 전시사항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10.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11. 확장부위에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접한 면은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12.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3.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4.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15. 발코니주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16.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7.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 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8.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9.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20. 세탁기실에 세탁기와 실외기실 철재문짝의 간섭으로 열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21.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상부장 후면은 천정 물딩이 설치되지 않음. / 수전, 우·오수 선홈통, 드레인, 배수구 등의 위치는 건본주택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창호 개폐방향 및 사양은 건본주택 기준임.)
22.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의 경우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실제 시공된 제품의 색상 및 무늬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목자재의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23. 본 공사시 신발장내부에 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24. 건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임.
25. 공사시 각세대 욕실의 타일 코너면에는 전용 타일 (PVC)비드가 설치됨.
26. 각 세대 침실1의 도어에는 모터스타입(키 잠금장치)의 도어락이 설치가 되고, 기타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키잠금 안됨)의 도어락이 설치됨.
27.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28.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9. 각 주택형별 선택사항에 따라 마감 및 가구설치 모양이 달라지며, 계약시 선택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변경이 불가함. (건본주택 참조)
30. 본공사시 세탁실 벽에 점검구가 설치됨.(단 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음)
31. 건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본주택 가시시설물 또는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 환기시설로 본공사시 인허가된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위치와 사양 등이 건본주택의 경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천정형 냉,난방기는 건본주택 자체의 냉,난방설비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32. 가변형 벽체는 건식벽체로 설치되므로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과 같은 방음 효과는 떨어져 실별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33. 세대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 구획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대피공간의 실 사용면적은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4.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35.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야 및 계약전 분양카달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36. 저층부 마감이 석재로 시공될 경우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Size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7.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38.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9. 세대 내부의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40.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1.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2. 단지내 도로에서 저층세대는 시선차단이 안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43.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 환기 방식을 적용하고, 다용도실(발코니)에 설치되며 기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있음.
44. 안방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음
45. 에어컨 냉매배관은 안방은 벽부형, 거실은 스탠드형을 기준으로 설치됨
46. 주방 개수대 허부장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뒷면은 타일 시공하지 않음.
47.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와 겹치는 타입은 상부장 내부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48.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허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49. 단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50. 일부 발코니에는 청소용 급수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51.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52. 저층 세대 외벽 마감재는 주출입구 측벽 일부만 석재로 시공되며, 나머지 구간은 석재 뿔철로 시공되며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3. 공장 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 판단기준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사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54.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55. 실 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 바닥 난방 시 배관 및 마감구배 등에 의하여 바탕구배 및 단열재의 치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56. 욕실 및 발코니, 현관 타일면의 줄눈 간격은 견본 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7. 세대 실외기실 창호(내,외부)는 에어컨 가동시 개방하여 사용하여야 함.(추후 안전사고, 기능저하우려)

■ 기타 유의사항

1.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3.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4.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5.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6. 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7.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8.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동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9.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10. 본 카달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가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11.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12.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달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13.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달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등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울산시청, 한국도로공사, 철도사업단,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문의 및 홈페이지 내용을 근거하여 각각의 교통계획 또는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4.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15.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16.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성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7.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18.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19.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20.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건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1.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2. 계약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23.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24.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25.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26. 사업주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권 및 매도인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함에 동의함.
27. 잔금납부 전 개별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60일내 법규정을 준수하시어 시공을 완료하여야 함.
28.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29.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30. 본 모집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3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32. 법정기준치에 따라 허용되는 지반공사 및 토목공사 등은 공사실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유의사항

1.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책을 수립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울산광역시개발지구와 산업로(국도7호선)연결을 위한 접속도로(대로2-36호선) 중, 동해남부선 횡단간(대로2-1호선) 부분은 동해남부선 철로 이설 후 설치가 가능함을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IX 기타사항

■ 주택법 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 울산 송정지구 B-751, 공동주택 2. 신 장 처 : (주)에이치이엠개발 3.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 4. 시설등급</p> <p>3. 주요 배선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구분</th> <th>배선 방법</th> <th>기준</th> <th>비고</th>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able> <p>나. 구조 성능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구분</th> <th>배선 방법</th> <th>기준</th> <th>비고</th>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r> <td>전압강하</td> <td>배선 방법</td> <td>기준</td> <td>배선 방법</td> </tr> </table> <p style="font-size: 0.7em;">*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7년 1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구분	배선 방법	기준	비고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구분	배선 방법	기준	비고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green;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인증 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d>인증대상</td> <td>울산 송정지구 B-751, 공동주택</td> <td>인증번호</td> <td>제2017-002</td> </tr> <tr> <td>인증주</td> <td>(주)에이치이엠개발</td> <td>인증기관</td> <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인증(발행)일</td> <td>2017년 01월 19일</td> <td>유효기간</td> <td>2017.01.19. ~ 사용종료</td> </tr> </table> <p>[인증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d>주 소</td> <td>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td> <td>인증등급</td> <td>일반등급(공동주택)</td> </tr> <tr> <td>층 수</td> <td>지하층, 지상2층 / 54세대</td> <td>인증기준</td> <td>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r> <td>발 주 자</td> <td>에이치이엠개발</td> <td>인증기준</td> <td>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r> <td>발 주 자</td> <td>에이치이엠개발</td> <td>인증기준</td> <td>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분야</th> <th>평가점수</th> <th>등급</th> </tr> <tr> <td>보안 및 화재</td> <td>34%</td> <td>★★★★</td> </tr> <tr> <td>에너지 및 환경</td> <td>63%</td> <td>★★★★</td> </tr> <tr> <td>재료 및 자원</td> <td>49%</td> <td>★★★★</td> </tr> <tr> <td>환경관리</td> <td>27%</td> <td>★★★</td> </tr> <tr> <td>유지관리</td> <td>19%</td> <td>★★</td> </tr> <tr> <td>생태환경</td> <td>17%</td> <td>★★</td> </tr> <tr> <td>실내환경</td> <td>48%</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1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인증대상	울산 송정지구 B-751, 공동주택	인증번호	제2017-002	인증주	(주)에이치이엠개발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발행)일	2017년 01월 19일	유효기간	2017.01.19. ~ 사용종료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층 수	지하층, 지상2층 / 54세대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발 주 자	에이치이엠개발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발 주 자	에이치이엠개발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분야	평가점수	등급	보안 및 화재	34%	★★★★	에너지 및 환경	63%	★★★★	재료 및 자원	49%	★★★★	환경관리	27%	★★★	유지관리	19%	★★	생태환경	17%	★★	실내환경	48%	★★★★	<p style="text-align: center;">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인증번호 제 2017-202-003 호</p>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16년 02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언론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0.8em;"> <tr> <th>구분</th> <th>이름</th> <th>주소</th> </tr> <tr> <td rowspan="2">상업건물</td> <td>이름</td> <td>주식회사 컴터리뷰개발</td> </tr> <tr> <td>주소</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2007호 (1차지동)</td> </tr> <tr> <td rowspan="2">건축물</td> <td>이름</td> <td>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td> </tr> <tr> <td>주소</td> <td>(4423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지구 B7동4</td> </tr> <tr> <td rowspan="2">인증내용</td> <td>구분</td> <td>AA, A, A</td> </tr> <tr> <td>인증등급</td>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종건물, 1등급, 2등급</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02월 03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전파관리소장 (인)</p>	구분	이름	주소	상업건물	이름	주식회사 컴터리뷰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2007호 (1차지동)	건축물	이름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	주소	(4423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지구 B7동4	인증내용	구분	AA, A, A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종건물, 1등급, 2등급
구분	배선 방법	기준	비고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구분	배선 방법	기준	비고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전압강하	배선 방법	기준	배선 방법																																																																																																													
인증대상	울산 송정지구 B-751, 공동주택	인증번호	제2017-002																																																																																																													
인증주	(주)에이치이엠개발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발행)일	2017년 01월 19일	유효기간	2017.01.19. ~ 사용종료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층 수	지하층, 지상2층 / 54세대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발 주 자	에이치이엠개발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발 주 자	에이치이엠개발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분야	평가점수	등급																																																																																																														
보안 및 화재	34%	★★★★																																																																																																														
에너지 및 환경	63%	★★★★																																																																																																														
재료 및 자원	49%	★★★★																																																																																																														
환경관리	27%	★★★																																																																																																														
유지관리	19%	★★																																																																																																														
생태환경	17%	★★																																																																																																														
실내환경	48%	★★★★																																																																																																														
구분	이름	주소																																																																																																														
상업건물	이름	주식회사 컴터리뷰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2007호 (1차지동)																																																																																																														
건축물	이름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B7동4																																																																																																														
	주소	(4423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송정지구 B7동4																																																																																																														
인증내용	구분	AA, A, A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종건물, 1등급, 2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규정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재	변압기	적용
	전동기	적용
	급수펌프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절비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원)
건축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1,256,637,800원
전기	(주)라인엔지니어링	417,836,000원
소방 / 통신	탑이엔지(주)	269,500,000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천원/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51,100,50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2,561,115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부터 발표 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 밖의 비용	2,433,155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56,094,770	
공사비	토목	15,550,015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62,431,111	공통시설공사, 가시시설공사 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9,462,374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공사비
	그 밖의 공종	16,288,169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11,794,881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15,526,550	
간접비	설계비	624,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1,943,973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2,199,826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4,767,799	
그 밖의 비용		18,417,68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계		194,806,8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심사결과 (택지비가산비: 14,908,815,768원 / 건축비가산비용: 18,422,148,943원)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7-101-0002000호	136,364,7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 제4호)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택분양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분양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택분양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분양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분양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분양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흡오토, 발코니새시,마이너스웬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택분양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택분양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택분양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택분양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렌테리움개발	(주)금강주택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2007호(대치동, 금강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법인등록번호	110111-5713006	110111-03133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서울-주택2015-0123	서울-주택1982-0003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kkapt1.co.kr

▣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97-1,2,3번지 (울산 송정택지개발지구 B7블럭 금강렌테리움 견본주택)

▣ 분양문의 : ☎1899-777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